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9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14.

발 의 자 : 한기호 · 김성원 · 김영선
김희곤 · 임병헌 · 엄태영
하태경 · 최재형 · 조정훈
태영호 · 지성호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군포로이었다가 억류국등에서 귀환 후 전역한 사람은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그 대우, 지원, 예우는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승격된 국가보훈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함.

이에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, 지원,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(안 제6조의2 등).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및 제5항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각각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국방부장관의”를 “국가보훈부장관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국방부장관이”를 “국가보훈부장관이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2제1항 전단·후단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각각 “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3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5제1항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“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, 제2항 및 제3항 중 “국방부장관은”을 각각 “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부사관에게 지급하는 퇴역연금
의 평균월액을 말한다)의 100
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
족지원금으로 지급한다.

⑥ ~ ⑦ (생략)

제13조(주거지원) ① 국방부장관
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보증금
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
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
받는 등록포로는 주민등록 전
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국
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
하고는 주거지원으로 받은 임
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
수 없고 전세권 또는 임차권
(이하 “전세권등”이라 한다)을
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
수 없다.

③ 제2항에 따른 전세권등의
등기신청은 등록포로를 대리하
여 국방부장관이 한다. 이 경우
전세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
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
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.

-----.

⑥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주거지원) ① 국가보훈부
장관은-----

-----.

② -----

-----국
가보훈부장관의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국가보훈부장관이-----

-----.

제14조(의료지원) 국방부장관은
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
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의
료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(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
대한 지원금) ① 국방부장관은
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
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
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제15조의2(국군포로 유해의 송환
비용 지원) ① 국방부장관은
포로가족이 국군포로 유해를
억류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송
환하여 안장한 때에는 유해 송
환에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
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
우 국방부장관은 국군포로 유
해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그
국군포로 유해 및 포로가족에
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
여야 한다.

② ~ ③ (생 략)

제15조의3(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제14조(의료지원) 국가보훈부장관
은-----

-----.

제15조(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
대한 지원금) ① 국가보훈부장
관은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의2(국군포로 유해의 송환
비용 지원) ① 국방부장관 및
국가보훈부장관은-----

-----.
-----국방부
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----

-----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의3(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에 대한 취업지원) 국방부장관
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
지출신 포로가족의 안정적인
국내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
원을 할 수 있다.

제15조의5(국군포로에 대한 예우)

①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, 제6
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
사망한 귀환포로, 귀환하기 전
에 사망한 국군포로에게 억류
기간 중의 행적이나 공헌의 정
도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수
있다.

② (생략)

제19조(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·

재개) ①국방부장관은 이 법에
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는
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
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.

1 ~ 3. (생략)

②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
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

에 대한 취업지원) 국가보훈부
장관은-----

제15조의5(국군포로에 대한 예우)

①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
장관은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·

재개) ①국방부장관 및 국가보
훈부장관은-----

1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
장관은-----

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대하여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. ③ <u>국방부장관은</u>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대우 또는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. 1 ~ 3.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③ <u>국방부장관 및 국가보훈부장관은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 ~ 3. (현행과 같음)
--	--